



서면 등에 의한 정기주주총회 결의

이 내용은 주주총회와 관련된 일본법제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자 상사법무 제1664호(2003.6.5자)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이다<편집자註>.

I. 시작하며

2002년 개정일본상법(2002년 법률 제44호)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제도를 신설하였다(일본상법 제253조).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와 달리 이 제도를 이용하면 회사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유한회사법은 사원총회에 대해 이전부터 서면결의를 인정하여 왔다.¹⁾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주수가 많고 의사결정은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인지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와 같은 편법은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주주의 수가 많지 않아 주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쉬운 주식회사도 상당히 많다. 그와 같은 회사에 있어서 의미가 거의 없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생각하고 간편한 방식의 결의가 인정되게 된 것은 현실을 반영한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상법 제253조의 적용범위를 좁게 한정하여, 동조의 간편한 방식이 정기주주총회에는 이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정기주주총회에는 보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조는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만 규정하고, 「보고가 있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일반화되어 동조의 간편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보고사항이 없는 임시주주총회만으로 한정된다고 한다면 그 효용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보고사항이 있는 주주총회, 즉 정기주주총회에도 동조가 정한 간편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먼저 일본상법 제253조가 규정된 취지 및 그 방식에 의한 총회결의가 주주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다음으로 총회의 보고사항에 대해 동조의 간편한 방식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총회 개최를 전제로 서면 투표·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여 주주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게 된 경우 총회의 개최를 생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 제도와 서면등에 의한 결의제도와 비교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정기총회의 개최일이나 종결시점이 기준시가 되는 법률관계는 회의가 개최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 지에 대하여 우리들의 견해를 기술한다.

1) 2002년 개정전의 일본유한회사법 제42조는 총사원의 동의를 있으면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으며(제1항,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제2항), 서면에 의한 결의에 사원총회결의와 동일한 효력 부여(제3항), 및 서면에 의한 결의에 사원총회의 규정을 준용(제4항)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사원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점은 제1항·제2항과도 동일하지만 제1항의 경우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갈음하게 하는 동의이고 투표의 결과, 반대표가 많아 의안이 부결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2항의 경우는 의안 그 자체에 총사원이 동의하고 있고 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다시 투표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 전원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의 성립을 의제했다. 개정일본상법 제253조는 위의 제2항을 주주총회에 응용한 것이다. 즉 2002년 개정후의 일본유한회사법 제42조는 회의 개최의 생략에 관한 구 제1항의 방식만을 남겨 두었다(서면외에 전자적 방법을 추가). 의안 그 자체에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의 구 제2항 방식은 일본상법 제253조를 준용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일본유한회사법 제41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결의 사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총회결의로 정한 경우 인정된다(일본유한회사법 제38조의3, 제38조의4). 이것은 주식회사에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한 방식에 대응한다(일본상법 제230조의2, 제233조의3. 다만 일본상법특례법 제21조의3, 21조의4). 그러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하는 결의방식은 유한회사에는 인정되지만 주식회사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별도의 기회에 검토하고 싶다.

II. 서면등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제도

1. 취지와 효용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이사 또는 주주가 제안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그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 전원이 그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기재한 경우이다(일본상법 제253조 제1항).²⁾

모든 주주가 의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경우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 제도를 두게 된 취지이다.³⁾ 소규모폐쇄회사, 합병회사, 기업집단내의 자회사 등 주주수가 적은 회사에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회사에 있어서는 모든 주주가 의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든지, 사전에 구두등으로 의안 설명을 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주주간에 대립·분쟁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주주 전원의 동의를 통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주주의 총의가 원만히 형성된 이상, 다시 회의를 개최하거나 투표를 하는 것은 주주, 기타 관계자입장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서면에 의한 간편한 결의방식을 이용하면 총회 개최에 따른 노력·시간·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2. 필요한 절차

(1) 간주결의의 성립요건

주주의 동의는 동의를 대상이 되는 제안의 내용이 기재되었던 서면상에 이루어져야 하고, 주주 전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서면이 갖추어져야 한다. 동일 서면상에 제안내용과 주주의 동의가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건에 대하여 주주가 한 동의를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⁴⁾

위의 서면은 ①주주별로 작성된 것이 전원분 갖추어지거나, ②1매에 1인 또는 수인의 동의가 기재된 복수의 서면을 모은 전체가 주주 전원본이 되거나 또는 ③1매의 문서에 총주주의 동의가 기재되는 방법 중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⁵⁾ 복수의 서면인 경우 모든 것이 동일한 일자일 필요는 없다. 일자가 다른 복수의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간주결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2) 기록의 보존

위의 의안내용과 주주의 동의를 기재한 서면은 본점에 10년간, 그리고 그 등본을 지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일본상법 제253조 제2항 → 제244조 제5항).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이 서면의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일본상법 제253조 제2항 → 제263조 제3항). 모회사의 주주도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등을 청구할 수 있다(일본상법 제253조 제2항 → 제263조 제7항).



2) 제안내용 및 주주의 동의는 전자적 기록에 의하여도 된다. 본고에서는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에 '전자적 기록'을 포함하고 '기재'에 '기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쓴다. 또한 「그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라고 하는 것은 의결권제한주식(일본상법 제222조 제1항 제5호) 등이 있기 때문인데 이하에서는 단순하게 하기 위해 보통주식만을 발행한 회사를 상정했다.

3) 始關正光, 「平成一年改正商法の解説 [IV]」, 商社法務 第1640号(2002년), 6面.

4) 전자적 기록을 사용하는 경우는 하나의 문서파일에 제안내용과 주주의 동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일은 쉽게 변조가 가능하다. 주주의 동의가 기록되었을 때에, 이미 의안내용이 파일에 기록되어 있고 주주가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간주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기술적 방법이 문제된다.

5) 본문의 ①이나 ③ 어느 쪽이라도 좋으며,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이 혼재되어도 관할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始關, 전제논문(주 3), 7면. 이 경우 본문의 ②를 부정되는 취지는 아닐 것 이다.



(3) 의사록을 대신할 서면

앞에서 기술한 서면의 비치등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 의사록이 작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는 조치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⁶⁾

다른 한편 상업등기의 신청에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간주결의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사록에 대신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 일본상법 제253조 제1항은 의안내용과 그에 대한 주주의 동의를 동일한 서면에 기재되어 이것이 주주전원에 대하여 갖추어질 때 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치해야 할 서면과 주주명부 각각의 복본을 첨부하게 될 것이다.⁷⁾

III. 서면 등에 의한 보고와 주주의 이익

1.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주주총회에는 결의사항 이외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가 법정되어 있다. 그중 전형적인 것이 정기주주총회에 있어서 계산서류관계의 보고이다. 어떤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영업보고서는 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일본상법 제283조 제1항). 대회사 및 간주대회사에서는 회계감사인과 감사 전원의 의견이 적정인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도 주주총회에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일본상법특별법 제16조 제1항). 나아가 위원회등설치회사에서는 마찬가지로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인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에 대하여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일본상법특별법 제21조의3 제1항, 일본상법시행규칙 제141조).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이유는 그 정보를 주주에

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주주가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법이 기대하는 지는 보고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확일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영업보고서등 일부 계산서류내용의 보고는 이익잉여금 처분안등 나머지 계산서류의 승인결의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덧붙여 이와 같은 영업성적에 관한 정보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이익잉여금 처분도 포함한 모든 것이 보고로 갈음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것이 유일한 기능일 것이다.

보고를 총회석상에서 행하는 경우에 통상은 보고내용을 구두로 설명한다. 주주에게 질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질문이 있으면 필요한 범위내에서 바로 설명한다. 결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의방법이 법령위반으로 결의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일본상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보고사항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고내용이 결의사항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보고라든지 보고에 관한 설명이 부적절하다면 결의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고 결의취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서면에 의한 보고

일본상법 제253조는 간주결의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해야 할 보고를 서면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보고는 모두 주주총회장에서 직접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의마저도 서면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에 대하여도

6) 始關, 전개논문(주 3), 7면.

7) 의안내용과 주주의 동의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기록을 신청서에 첨부한다(상업등기법 제19조의2). 상세한 것은 일본상법 등기규칙 제36조에 정해져 있다.

서면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둘 필요까지는 없다 - 이와 같은 고려에서 규정되었다고 우리들은 이해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보고를 행하면 좋을까. 보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주 전원에게 교부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여 보고의 바람직한 형태를 모색하고자 한다.

영업보고서등의 계산서류는 회의를 개최하는 통상의 경우에도 소집통지와 함께 주주 전원에게 교부된다(일본상법 제283조 제2항). 이것만으로는 보고했다고 볼 수 없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접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동조 제1항, 일본상법특례법 제16조 제1항). 여기에서는 영업보고서등을 상세하게 읽어줄 필요까지는 없고, 중요한 부분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계산서류를 주주 전원에게 교부하는 것 외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보고의 대상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영업보고서의 내용이 보고사항인 회사는 나머지 계산서류를 승인받고 싶다는 뜻의 이사회 제안을 동일한 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통상일 것이다.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의 내용이 보고사항인 회사는 이익잉여금처분안을 승인받고 싶다는 뜻의 이사회 제안을, 동일한 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통상일 것이다. 모든 계산서류를 내용의 보고로 갈음하는 회사는 리스트에 기재된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싶다는 뜻의 이사회 제안을, 동일한 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통상일 것이다(일본상법특례법 제21조의6 제1항, 제21조의8 제1항 참조). 이들 결의사항에 관한 제안을 기재한 서면에 각각 보고해야 할 내용 및 이에 대하여 보고한다는 뜻의 기재가 있고, 제안에 대한 주주의 동의가 동일한 서면에 기재되어 주주 전원분이 갖추어지면 보고가 있었

던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⁸⁾. 「보고한다」라는 뜻의 기재에는 영업보고서등이 그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참조처를 특정하여 별지의 기재를 해두면 충분할 것이다.⁹⁾

3. 주주의 이익

주주총회의 보고사항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가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주주의 이익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1) 결의와 보고

주주총회의 결의조차 서면에 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에 대하여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앞에서 기술했다. 결의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측면이 보고라고 하는 정보제공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고 보다 신중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주주총회결의는 회사의 행동을 의결하는 의사결정이고 이사 및 집행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일본상법 제254조의3, 일본상법특례법 제21조의14 제7항 제5호). 결의사항에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많은 경우 이는 특별결의사항)도 있다. 총회에서 심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주주는 의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면서 다른 주주의 동향을 감안하여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주는 이와 같은 이익을 포기하고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고는 그 자체가 회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등 회사기관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받은 측의 주주로서도 구두 대신에 서면에 의하는 것이 불이



8) 전자적 기록에 의한 보고에 대하여는 주 4) 참조.

9) 「보고한다」는 뜻의 기재에 덧붙여 회의를 개최하면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면 그 기회를 잃는다는 뜻, 혹은 질문의 기회를 확보하고 싶다면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의 주의를 부가하는 것이 친절한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기가 없다고 하여 보고가 없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주주와의 긴밀함이 확보한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의 이용을 통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일반적으로 구두 보다는 서면이 절차로서는 무겁다).

(2) 질문의 기회

주주총회에서 보고를 받는 보고라면 주주가 질문을 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면에 의한 보고는 이것과 달리 일방통행이라 할 수 있다. 주주에게서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주주의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면에 기재된 보고사항을 읽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총회장에서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듣고 싶은 주주는 결의사항에 관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한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상법 제253조의 간략한 방법으로 갈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본칙으로 되돌아가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여야 한다. 주주에게는 이러한 대안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주주에게 질문의 기회를 박탈한다고는 할 수 없다¹⁰⁾.

(3) 절차의 간략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등에 의한 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통상은 심의의 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강제된다. 그러나 수임자인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의무를 지는 것과 달리 주주에게 총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회의에서의 심의에 참가를 희망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이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의미가 있다.

보고사항을 포함하여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것에 주주 전원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최를 강제하는 것은 쌍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강

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의사항이 모두 간주결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보고만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추가설명을 원하지 않는 주주가 출석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정기주주총회에는 보고사항이 항상 있어야 하지만 이것을 일본상법 제253조의 간략한 방법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IV. 서면 등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의 비교

1. 서면등에 의한 의결권행사

2001년 11월 개정일본상법은 회사의 규모나 주주수와는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주주가 서면에 의해(일본상법 제239조의2)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일본상법 제239조의3)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¹¹⁾ 각각을 서면투표, 전자투표라고 부르도록 한다.

앞에서 기술한 서면등에 의한 결의가 당초부터 총회의 결의를 생략하는 것임에 대하여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는 총회의 개최를 전제로 하면서 결석주주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후자의 경우에 출석주주는 질의응답을 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소집통지에 의제를 기재하고 아울러 의안내용이 기재된 참고서류를 사전에 주주에게 제공한다(일본상법 제239조의2 제2항, 제239조의3 제2항, 일본상법시행규칙 제12조 내지 제20조). 정기주주총회 소집시에는 계산서류 및 감사보고서의 등본을 주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일본상법 제283조 제2항, 일본상법특례법 제16조 제1항). 소집통지나 참고서류 등은 서면의 형식으로

10) 서면에 기재된 제안에 주주가 찬성하는 한, 보고에 대하여 질문만을 위하여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은 취지의 기술을 회사가 하면 문제이다. 설명의 부족이 의안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III. 1. 및 앞의 주석 참조

11)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1,000명 이상 있는 대회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인정하는 것을 이전부터 강제하고 있다(일본상법특례법 제21조의3).

송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일본상법 제232조 제2항, 제239조의2 제3항, 제239조의3 제2항, 제283조 제3항). 어느 방법이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은 소집통지나 참고서류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일본상법 제253조의 요건과 다른 것이다.

2. 전원 찬성의 서면투표·전자투표

서면투표·전자투표를 채택한 경우에 모든 주주가 사전에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보고사항 유무와 상관없이 당연히 총회의 개최를 생략해도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서면투표 등을 한 주주도 스스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주주는 전의 서면투표등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철회된 분을 투표수에서 공제한다) 회사는 소집통지에서 총회의 일시·장소 등을 알려준 이상 이와 같이 의견을 번복하는 주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총회 개최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출석자가 1인도 없는 때에는 어떻게 할까. 이 경우에도 일단 총회를 개최했다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 하면 첫째 서면투표등의 제도는 총회의 개최를 전제로 하여 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대한 특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총회 그 자체의 생략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둘째 등기사항에 대하여 총회결의가 필요한 때는 등기신청서에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의사록이라고 하는 이상은 총회가 개최되었다는 형식을 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¹²⁾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출석한 주주가 없는 경우에 아무도 없는 주주석을 향하여 보고사항을 읽어줄 필요는 없다. 주주총회 의장은 개회선언에 이어, 출석자가 없으므로 보고사항·결의사항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며, 아울러 서면투표 등에 의해 전체 의안이 승인, 가결되었음을 확인하고 바로 폐회선언을 하면 될 것이다. 의사록에는 이와 같은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다.¹³⁾

3. 간주결의외의 대비

이와 같이 서면투표등을 채택한 경우에 주주전원이 사전에 찬성의 의결권행사를 하고 당일의 출석주주가 1인도 없는 때는 이것이 정기주주총회에 있어서도 보고사항을 읽어줄 필요는 없고 기타의 심의도 모두 생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총회의 개최를 전제로 하는 경우까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주전원이 미리 현실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보고사항에 대하여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고사항만을 읽어주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더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V.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기등의 확정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또는 그 종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사의 임기(일본상법 제256조 제3항, 제261조, 제374조의27, 제414조의3), 감사의 임기(일본상법



12) 일본상법 제253조의 간주결의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대신할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 앞의 주 6·7) 및 각각의 본문 참조 서면투표·전자투표에 의해 성립하는 것은 간주결의는 아니고 정규의 총회 결의이기 때문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은 의사록 그 자체이다.

13)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주주에 의한 의결권행사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결의부존재라고 할 수는 없고 결의취소의 원인에 그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주주 전원이 찬성한다는 서면투표를 하고 있는 앞의 사례의 경우 결의취소의 소는 재량기각(일본상법 제251조)되게 될 것이다. 혹은 스스로 출석한 주주가 없었다는 사실에 따라 불개회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제273조 제1항 및 제2항 등), 회계감사인의 임기(일본상법특례법 제5조의2 제1항), 계산서류의 감사등에 대한 제출기한(일본상법 제281조의2 제1항, 일본상법특례법 제1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등), 계산서류의 비치기간(일본상법 제282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¹⁴⁾ 간주결의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일본상법 제253조 제1항은 의결권을 보유한 전체 주주로부터 제안의 내용과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이 회사에 제출된 때에 해당 제안을 가결하는 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서면이 모두 회사에 갖추어진 때에 총회가 개최되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될 것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이 갖추어지는 시점은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즉,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적 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는 결국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정할 수밖에 없다.¹⁵⁾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시점을 사전에 확정하여 두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편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회사가 주주에게 서면에 의한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요청하는 서면상에 기준으로 하는 일시를 기재해 두는 것을 생각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⁶⁾

주주 전원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및 종결시점으로 간주되는 일시에 대하여 동의가 있다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VI.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면등에 의한 총회결의 제도를 정기주주총회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내에 자회사의 주주총회에도 유용하다. 기업집단내의 자회사에게는 주주가 모회사뿐인 경우도 많고 이와 같은 완전모회사간에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자회사의 영업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굳이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모회사는 자회사의 영업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회사가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현실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자회사가 수습에서 수백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자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모회사의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집단내 각 회사의 결산기를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정기주주총회의 시기가 집중된다). 대규모기업집단내의 작은 자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의사록의 작성만으로 끝마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서면등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제도가 신설되어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보고사항과 의안 모두를 기재함으로써 정기주주총회에 대하여도 서면등에 의한 결의제도가 이용가능하다고 하는 해석과 실무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14) 이외에 일본상법 제20조의2 제3항, 제210조 제2항 제1호, 제239조의3 제5항 등도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15) 이사의 행위가 임기만료후에 이루어졌는지, 계산서류의 비치 개시일이 회일전 2주기간이 안된다든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도 사실과 달리 의사록의 기재를 기준으로 한 처리는 역시 위법한 것이 될 것이다.

16) 예컨대 다음과 같이 문서에 기재한다. 「제○○회 당사 정기주주총회에 대하여서는 일본상법 제253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에 의한 보고 및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의 보고사항 및 결의사항을 보신 후 결의사항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수고스럽겠지만 말미의 서명란에 서명한 후 2003년 6월 26일까지 당사에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주로부터 본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의안에 동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03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당사 제○○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동시각에 동 총회를 종결한 것으로 취급하겠습니다.」